환경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5(목). 12:00 (금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3. 1. 4(수).
담당 부서	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	책임자	과 장 권병철 (044-201-6805)
		담당자	서기관 기대정 (044-201-6828)
			사무관 송성욱 (044-201-8474)

공기소독용 살균제 전수 점검 실시

- 안전성과 효과를 승인받은 제품만 유통되도록 관리체계 강화 -
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,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·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.

○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'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 화학제품안전법)'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*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.

*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·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, 모터건스프레이식,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, 연무 가열식 등이 있음

○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, △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, △살균·항균에 대한 표시·광고 시 효과·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.

□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,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·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,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.

○ 또한 지난 2021년 7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·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'신고대상'에서 제외했고, '승인대상*'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미승인·미신고 제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.

* 업체가 안전성과 효과·효능을 입증하는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

○ 그런데도,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·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,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.

□ 한편,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을 평가했다.

○ 이 평가는 제품 내 살균·항균기능의 유효성분 물질 5종*에 대해 제품 형태, 사용 행태,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
* 에탄올, 차아염소산, 이산화염소, 구연산, 오존 등

○ 위해성평가 결과,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, 주의사항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다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(사용빈도, 1회 사용량 등)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,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□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.

○ 특히,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이미 요청 및 조치했다.

○ 또한,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·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·항균 대한 효과·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하여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·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.

□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“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·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·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”이라며,

○ “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	책임자	과 장	권병철 (044-201-6805)
		담당자	서기관	기대정 (044-201-6828)
			사무관	송성욱 (044-201-8474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	책임자	센터장	홍석정 (02-2284-1868)
		담당자	책임연구원	김진용 (02-2284-186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위해성 평가 절차 및 방법

□ **(유해성 확인)** 노출경로별(경구, 경피, 흡입) **독성 영향**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**Key data를 선정하여,** 위해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**최종 독성값, 목표 MOE*** **등을 결정**

* Margin of Expose(노출한계) : MOE가 목표 MOE보다 작을 경우, 위해 가능 판단

□ **(노출 평가)** 평가대상 제품별 **노출모형 구축,** 노출 알고리즘 정립 및 노출계수 값 구축을 통한 **노출량 산정**

○ **(노출모형 구축)** 실태조사 DB 등을 통해 소비자 사용행태를 확인하고 제품별 용도와 노출유형을 정의하여 **제품 용도별 노출 모형 구축**

○ **(방출량 시험) 공기소독용 살균제**의 경우, 제품 **분사(방출)실험**을 통해 mass generation rate, airborne fraction 등의 제품 **노출계수를 확보함**

○ **(노출량 산정)** 위해성평가에 관한 국내외 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제품의 **노출 알고리즘*을 정립**하고,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·선행 문헌조사·제품 실측평가 등을 통해 **노출계수**를 확보**하여 **노출량 산정**

* 국립환경과학원「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-37호)」, 네덜란드 RIVM ConsExpo fact sheet 등 적용

** (1) 생리적 특성: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 및 한국 어린이의 노출계수 핸드북(국립환경과학원, 2019),
(2) 사용자 노출행태: 국립환경과학원「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-37호)」, "살생물제품 노출평가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노출계수 자료집(국립환경과학원, 2018)

□ **(위해성 평가)** 가정/유치원/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용 前·後로 구분

○ 살균·항균기능 유효성분 5종*에 대하여 제품내 **함량**과 **75분위수 노출계수**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, 일부 제품에서 **위해 가능성 확인**

* 에탄올, 차아염소산, 이산화염소, 구연산, 오존 등 5종의 살생물물질